

보도시점

2026. 1. 6.(화) 조간
2026. 1. 5.(월) 12:00

배포

2026. 1. 5.(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소비자물가변동률(2.1%) 반영하여 기초급여액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138만 원) 대비 2만 원 인상한 140만 원-

< 장애인연금 급여액 >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지급(전년동)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및 소득계층에 따라 30,000~220,000원 지급(전년동)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서 확대하여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3급 중복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이 외 중복 장애가 있는 자

** 3급 단일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자

<붙임> 장애인연금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2-3320)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2-3321)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장애인연금법」 제1조)

□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2급 장애 및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6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법 제4조)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고시(법 제6조)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6년 기준)

구분	18 ~ 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기초연금 (349,700원) 으로 전환	439,700원**	439,70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49,700원	-	349,70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49,700원	80,000원	429,70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49,700원	30,000원	379,700원		50,000원	50,000원

* 금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선정기준액 초과분 금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금액)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수급자 현황 : 34만 8,494명 (수급률 70.2%, '25.11월 기준)**